



Gyeongbuk Happiness Foundation News | 2024

Vol. 54

경북 행복 BRIEF

법 인 명 칭 경북행복재단
발행·편집인 경북행복재단 정재훈
주 소 39332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155 글로벌관 3층
T E L 054)710-8833
홈 페이지 www.ghf.or.kr

01

2023년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결과 분석

김성훈(경북행복재단 연구원) 이순희(영진전문대학교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조성숙(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02

둘째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유형 및 대응 방안

남영우(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 이선자(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송유미(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03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평가

안교철(경북행복재단 연구원)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¹⁾



김성훈(경북행복재단 연구원)

조성숙(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순희(영진전문대학교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모니터링 필요성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모니터링은 계획된 사업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여 더 나은 추진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임(용태희, 2021)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현에 있어 모니터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모니터는 체계적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상황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모니터링에 소홀한 것으로 파악됨(이지영·박순우, 2017)
-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지표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함. 모니터링 지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이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비추어 현재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세부사업 신설·변경·폐지·제외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2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체계구축

- 경상북도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모니터링이 점차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이 단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함
- 경상북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체계는 도 사업 모니터링과 22개 시·군 모니터링으로 나누어 모니터링을 실행하였음. 도 사업 모니터링을 위해 타 시도의 모니터링 지표 등을 검토하여 경상북도형 지표 개발 22개 시·군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점검표를 개발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1)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 연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1) 경상북도 자체사업 모니터링 지표 구성

- 첫째, 세부사업의 사업명, 목표량, 추진주체, 예산 등의 변경사항 확인
- 둘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목표달성도와 예산집행정도를 파악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음
- 셋째,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하였음
- 넷째, 지역여건 및 사회보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규, 폐지 사업 여부를 묻는 항목으로 구성하였음

그림 1.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과정



2) 22개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점검표 구성

- 모니터링 횟수, 시기, 모니터링단 구성현황, 시군 자체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지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하였음
- ※ 이번 시군 모니터링 점검표에서 성과지표에 체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해 달라는 대면모니터링에서 많은 의견이 있어 추후 점검표 수정 시 보완하고자 함

3) 22개 시·군 모니터링 실시 결과

- 첫째, 대부분의 시·군에서 하반기 1회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의 모니터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의 변화를 확인하기에는 낮은 감이 있음. 따라서 2024년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모니터링의 실시를 통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음
- 둘째, 모니터링 단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 협의회위원 등의 비중이 50%를 넘는 시·군이 다수 있었음. 공무원, 협의회 위원, 외부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이 균형있게 구성하도록 권고하였음
- 셋째, 성과지표에 대한 보완임. 아직까지 시·군에서는 모니터링단이 성과지표까지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앞으로 도의 시군 모니터링에서는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전문가를 컨설턴트로 영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자 함
- 넷째, 모니터링에 있어서는 세부사업 담당자의 자료 제출이나 협조가 중요함.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외 부서의 경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이해가 낮아 협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도 및 시·군은 앞으로 상반기, 하반기 인사이드 시기에 세부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도 병행하여야 할 것임

3 2023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4년 모니터링 방향

- 첫째, 모니터링 지표의 이원화가 필요함.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부터 두 개 전략으로 분리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두 추진전략의 성격도 차이가 있으나 2023년 모니터링 시에는 기존 사회보장사업 중심의 지표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다 보니 균형발전 추진전략의 모니터링에는 맞지 않는 문항이 있어 2024년 모니터링 시에는 지표를 사회보장사업 전략 지표와 균형발전 전략 지표로 분리하여 모니터링을 추진하고자 함
- 둘째,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모니터링단 육성 및 확대 운영을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주민모니터링단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임. 이에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시기에 맞게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매뉴얼을 통한 모니터링의 표준화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넷째, 2023년의 모니터링은 서류 중심으로 실시된 경향이 있음. 이러한 단편적인 모니터링으로는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계획수립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서류 중심의 모니터링과 병행하여 현장 참여 모니터링, 여러 시군 집단 모니터링 등 현실성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모니터링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있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모니터링이라는 의견이 많음. 이러한 모니터링을 몇 명의 인원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모니터링의 체계적 추진은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부분임

2023년 시행계획 시행결과 이행점검 모니터링 양식(공무원)

① (중점추진) 세부사업 1-1-1 사업명: 행복경로당 운영

수정 시 유의사항 : 모든 변경내용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여 수정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및 담당팀 변경 시 수정 부탁드립니다.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번호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1-1-1	행복경로당 운영	○	X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설	○○○	054-880-3752			
사업(과업)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인 경로당 밀반찬 지원으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의 건강을 도모하며, 공동 식사를 통해 서로 간 유대감을 가지며 어르신의 고독감을 해결하는 등 지역 공동체 중심의 경로당 역할 수행 						
사업(과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별 특화 사업 발굴·개발로 지역사회복지 거점 역할 						
추진근거(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경상북도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 및 예산지원)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가 있는 도내 경로당 					
	대상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개 시·군 경로당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 및 밀반찬 지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선정-수행기관 선정(밀반찬 조리 및 구매)-밀반찬 배달 					
	수행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센터, 시니어클럽 등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3년 예산(A)		8월말 기준 집행액(B)		집행률(%)()	
	계(㉠+㉡+㉢)	6,798	(100 %)		(%)		
	지방비	소계(㉠+㉡)	6,798	(100 %)		(%)	
		㉠ 도비	2,039	(30 %)		(%)	
		㉡ 시·군비	4,759	(70 %)		(%)	
	㉢기타 (재원명)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경로당 실적률(%) 					
	지표정의	{밀반찬 지원 실적/목표(8,100개 경로당)}×100					
	연도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90%					
	목표수준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 환경, 감염병 등에 따라 목표량 대비 90%를 기점으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2026년에는 95% 이상을 목표로 삼고자 함 					
자료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복지과 내부자료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센터, 시니어클럽 참여자가 경로당에 직접적으로 반찬 배달 실시 			
	공공기관	-					
	민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센터, 시니어클럽 등 					

모니터링 체크리스트(공무원 담당자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는 10점 척도로 1에 가까울수록 매우 그렇지 않다,
10에 가까울수록 매우 그렇다에 해당 됩니다. 담당자께서 생각하는 수치 값에 √하여 주십시오.

사업 추진 정도	
	I.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목표달성 정도	1. 사업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4점 이하로 응답하였다면),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달성하지 못한 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3 4점 이하로 응답하였다면 목표의 변경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기존 목표량: () 변경 목표량: ()
예산 집행정도	2. 예산이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1. 4점 이하로 응답하였다면, 집행액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2. 달성하지 못한 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3. 예산액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확대 편성, 감축 편성 다 가능) 기존 예산: (백만원) 변경 예산: (백만원)
사업 변경 정도	
	II. 당초 계획한 사업에서 변경이 필요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심의절차	3. 사업 변경 시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알고 있다. ② 알지 못한다.
사업변경정도	4. 세부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까? ①변경되지 않았다. ② 변경되었다.(변경내용 :) 5. 사업 담당자 및 담당팀이 변경되었습니까? ①변경되지 않았다. ② 변경되었다.(변경내용 :) 6. 지원대상이나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습니까? ①변경되지 않았다. ② 변경되었다.(변경내용 :) 7. 지원절차가 변경되었습니까? ①변경되지 않았다. ② 변경되었다.(변경내용 :) 8. 수행기관이 변경되었습니까? ①변경되지 않았다. ② 변경되었다.(변경내용 :)

[부록 2]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세부사업 공무원 담당자용) 계속

성과지표 고려(반영) 정도	
	III.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성과지표	10. 사업 운영에 성과지표가 충분히 고려(반영)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1. (4점 이하로 응답하였다면,) 성과지표가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1-2. (4점 이하로 응답하였다면,) 성과지표의 변경이 필요합니까? ①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아래 문항에 응답 요망). (변경) 성과지표 명: (변경) 산출 서식:
사업 운영 정도	
	IV. 지역여건 및 사회보장 환경에 변화가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환경변화	12. 지역여건 및 사회보장 환경 변화가 사업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1. (4점 이하로 응답하였다면,) 반영이 되고 있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V. 해당 사업은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민관협력	13. 사업수행에 민·관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3-1 (4점 이하로 응답하였다면,)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VI. 해당 사업은 홍보가 필요한 사업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홍보	14. 사업의 홍보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4-1 (4점 이하로 응답하였다면,)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VII. 위의 결과들을 토대로 이 사업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변경 및 폐지	VIII. 위의 결과들을 토대로 이 사업은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X. 개선과제 및 기타의견	

[부록 3]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모니터링단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모니터링단용)

◆ 일 자 : 2023. ○. ○
◆ 모니터링단 : ○○○

사업명				
시행계획 모니터링 내용	사업담당자 의견	모니터링 의견	변경요청내용 (심의요청내용)	비고
1) 실제 사업과 동일한가? ① 사업(과업)명 ② 사업(과업) 배경 ③ 사업(과업) 소관 ④ 추진근거(관련규정) ⑤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⑥ 지원대상 (선정기준/ 대상규모) ⑦ 사업(과업) 내용 (사업유형/ 세부내용) ⑧ 전달체계 (지원절차, 수행기관) ⑨ 사업비 ⑩ 성과지표 가) 성과지표명 나) 지표정의 다) 연도별 목표 라) 목표수준 산출근거 마) 자료출처 ⑪ 추진체계 가) 지자체 나) 공공기관 다) 민간기관 ⑫ 기타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예산집행률, 목표달성도의 적절성)				

[부록 4] 시·군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계속

6.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신설, 폐지, 변경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사업 번호	사업명	신설·폐지·제외·변경 내용			변경사유
		유형	23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전)	23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후)	

작성요령

- ▣ [사업번호], [사업명] 제5기 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번호 및 사업명을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신설 사업에 한해 새 번호 및 새 사업명 부여

 - 과제가 변경, 삭제되어도 고유번호는 고정, 신설 사업은 해당 추진전략별 기존 번호에 이어 새 번호로 부여
- ▣ [신설·폐지·제외·변경 내용] 신설·폐지·제외·변경 중 유형을 기재하고 그 변경 내용을 작성

 - 유형: 신설, 변경, 폐지, 제외 중 해당하는 내용을 기입
 - 변경 전/후: 변경 전과 후의 내용을 작성 - 세부분과 명칭은 각 분야별 분과 구성 시 해당 구분을 기재
- ▣ [변경사유] 다음 유형 중 선택하여 번호로 기입하고, ⑦ 기타'인 경우 사유를 기입

 - ① 수요 변화: 관련 수요 변화에 기인하여 사업 변경
 - ② 자원 및 예산 변화: 세부사업과 관련한 자원 및 예산으로 인한 변경
 - ③ 관련 법 및 정책 변화: 법·조례, 상위계획·정책의 변화로 인한 변경
 - ④ 전달체계 및 사업 수행기관 변화로 인한 변경
 - ⑤ 목표 달성완료: 사업성과목표의 기 달성으로 사업 변경
 - ⑥ 국고보조사업(보편사업) 제외
 - ⑦ 기타(사유:)

7.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의 신설, 폐지, 변경내용이 있을 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까?

- ① 이미 심의절차를 밟았다.
- ② 심의준비를 하고 있다.
- ③ 계획이 없다.

8. 중점 사업을 폐지하였다면, 중점사업을 대체할 사업을 작성해 주십시오.

예시: 작성 시에는 예시를 삭제하고 사용하시면 되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기존 중점 사업	신규 중점 사업
I-1-1 행복경로당 운영	I-1-7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참 고 문 헌

- 강혜규·김보영·주은수·채현탁·이지영·김태은·이정은·김진희.(2018).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 지자체의 제4기 계획 수립·실행 지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윤정·김은정·문현주. (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 제주연구원
- 용태희. (2021). 전라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운영방안 연구.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 이지영·박순우. (2017). 기초자치단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분석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파사회정책, 54, 453-486
- 함영진 외. (2021).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스 페 셜 코 멘 트

SPECIAL COMMENT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경북도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지역 사회 복지수요와 자원, 그리고 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괄하는 계획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로 정의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원래 목적과 목표에 맞게 이루어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세부사업 담당 공무원과 사업 수행기관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은 이러한 지원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단발적 모니터링이나 체계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의견을 기반으로 경북행복재단에서 모니터링 매뉴얼을 개발하여 추진한 점은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모니터링과 22개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모니터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사업을 명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부터 두 개 전략(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으로 분리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사업의 추진 방향성에 차이가 있으나 지표는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추후에는 두 개 전략을 분리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경상북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장 **이상미**

둘째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유형 및 대응 방안



남영우(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

송유미(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이선자(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1 출산의지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모색 필요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함.
- 출산율 저하는 선진국의 공통된 현상이지만 한국의 현상이 유독 심각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점에 있음.
- 인구변천이 단기간에 진행되는 저출산국가로서 앞으로의 인구정책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모아야 할 때임.
- 우선 저출산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더불어 출산을 유도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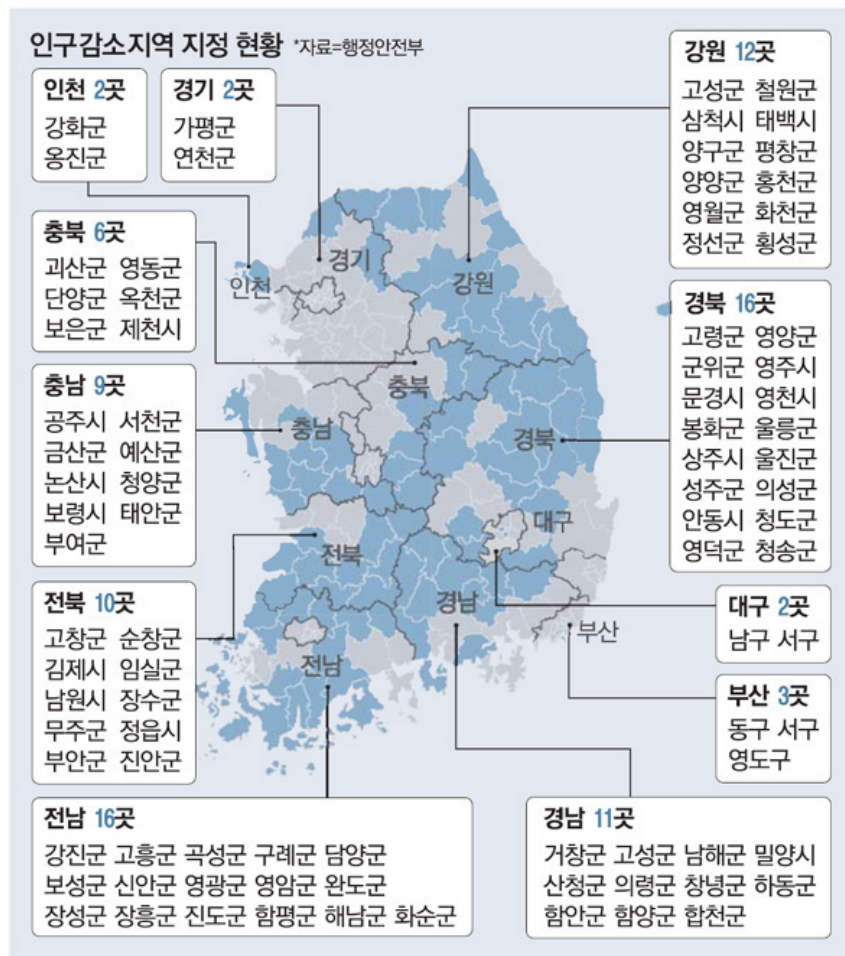
표 1.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연도	출생아 수	전년대비 증감율	합계출산율
2013	436.5천명	-9.90%	1.19명
2014	435.4천명	-0.20%	1.21명
2015	438.4천명	0.70%	1.24명
2016	406.2천명	-7.30%	1.17명
2017	357.8천명	-11.90%	1.05명
2018	326.8천명	-8.70%	0.98명
2019	302.7천명	-7.40%	0.92명
2020	272.3천명	-10.00%	0.84명
2021	260.6천명	-4.30%	0.81명
2022	249.2천명	-4.40%	0.78명
2023	230.0천명	-7.70%	0.72명

자료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2022년 기준 경상북도 가정 부부는 가사노동에서 남편의 분담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경북의 기혼 여성들은 타지역의 기혼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을 것이며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대구·경북지역의 순유출인구 가운데 20대 청년층의 유출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음.
- 경북의 청년층 유출이 심하다는 것은 가까운 미래의 생산인구가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고 저출산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경북도의 진지한 일자리 정책도 필요함.
- 경북 대부분 지역이 인구소멸지수가 낮기 때문에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만 20~39세 여성인구의 유출을 막고 정착하게 하여 그들의 결혼의지와 출산의지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임.

그림 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자료 : 행정안전부(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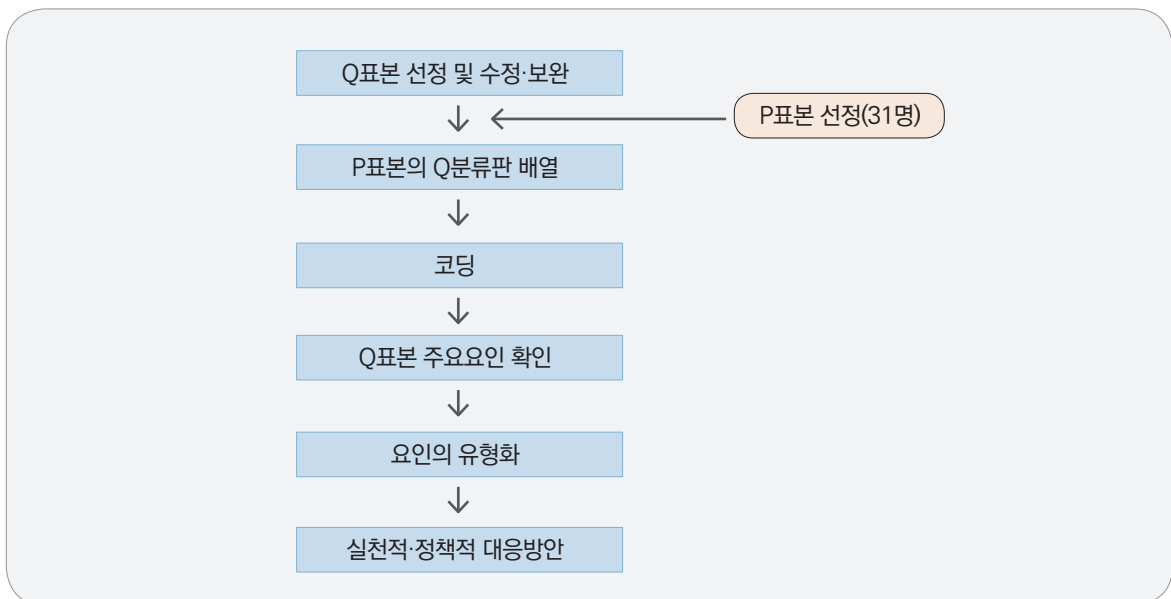
- 이미 한자녀를 출산한 부부의 경우 첫 자녀 출산 경험과 양육에 있어서 필요충분조건이 최소한 주어진 상태라면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한 의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영향요인의 탐색이 요구됨.
- 본 연구는 경북지역에 거주하면서 한자녀를 출산한 만 20~49세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둘째 자녀의 출산 기피 원인을 조사하고 그들의 의도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유형화함으로써, 유형별 새로운 저출산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및 결과

1) 연구 방법

- 저출산 연구 등과 같이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는 주로 탐색적 연구를 많이 진행하게 됨.
- Q방법은 이와 같은 탐색적 연구 및 확인적인 연구를 하는데, 효과적이고 유용한 분석 방법임.
- Q방법론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에서 독립변수(X)와 종속변수(Y)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 가설을 검증하는 일반 계량 연구와는 달리, 인간의 주관성 및 내면적 인식과 특성을 측정하고 유형화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1935년 윌리엄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음.
- 본 연구는 100개의 Q표본 모집단을 먼저 구성하였고, 모집단에서 최종 진술문(Q표본) 36개의 진술문을 선정하였음.
- 다음으로 P표본 31명이 연구에 참여하여 Q표본을 분류하였고, PQMetho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응답한 자료를 분석하여 P표본이 둘째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에 관해 유형화시키는 과정을 거쳤음.
- 이 결과를 거쳐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를 긍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음.

그림 2. 연구 설계 과정



2) 연구 결과

① 제1유형 : 일-가정 양립 곤란형

- 제1유형은 '일-가정 양립 곤란형'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직장 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음.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믿고 맡길 만한 양육자, 양육 기관이 많지 않고, 정책적으로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였음.
- 이 유형에서 동의한 진술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양육 정책이 부족한 점과 장시간 근무해야 하는 직장 환경과 업무로 인해서, 직장 내 보육(양육)시설 미비 등으로 둘째 자녀 출산이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였음.
- 이 유형 응답자들의 개방형 응답을 분석해 보면,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할 수 있는 여건만 주어진다면 출산하고 싶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② 제2유형 : 경제적 부담형

- 제2유형은 '경제적 부담형'으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유형으로 둘째 자녀 양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비 부족과 교육비 부담, 노후 자금 부족으로 인해 한 명의 자녀만 양육한다고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본적인 임신출산비용, 양육비, 교육비 등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필요한 비용의 부담으로 한 명의 자녀를 선택한다고 분석됨.
- 이 유형 응답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여러 명의 자녀가 좋다는 의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자신의 개인 가치나 노후의 삶의 질을 위해 한 명의 자녀를 선택한다기보다는 한 명 이상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너무 많이 요구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 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볼 수 있음.

③ 제3유형 : 출산 가치관 변화형

- 제3유형은 '출산 가치관 변화형'으로 자신의 삶의 중요성과 양육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음.
- 이 유형에서 동의한 진술문을 살펴보면, 한 명이라도 질적으로 잘 양육하고 싶다는 부분, 자기 자신의 개발과 성장에 방해 받고 싶지 않다는 점, 자녀를 양육하고 자신의 생활을 찾고 싶은 부분, 현실에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렵다는 부분 등에 동의가 되었음.
- 이 유형 응답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 양육에 있어 질적으로 잘 키워야 한다는 점,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 잘 키워야 한다는 욕구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음.

④ 제4유형 : 배우자 역할 갈등형

- 제4유형은 '배우자 역할 갈등형'으로 배우자가 양육과 가사 등에 비협조적이고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 둘째 자녀 출산을 기피한다는 진술문에 대하여 동의하였음.
- 이 유형에 분류된 진술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첫째 자녀의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역할 갈등을

경험하였거나 협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배우자와 가사 업무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분석됨.

- 이 유형 응답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배우자와의 가사 업무 분담, 육아 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음.
- 특히 이 유형의 여성들은 맞벌이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남편과의 역할 분담 없이는 육아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됨.

3) 대응 방안

- 본 연구에서는 경북지역에서 첫째 자녀 출산 이후 둘째 자녀를 기피하는 기혼 남녀의 유형별 정책적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 첫째,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직장 내 출산 및 양육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함.
- 출산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경력단절여성의 고용률을 높여 자녀출산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 시켜야 함.
- 둘째,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역할 상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온전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자녀에 대해 충분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지원 체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믿고 맡길 만한 대체 양육자, 양육 기관이 많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직장을 가진 취업모의 대체양육자와 양육기관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어 양육을 대체할 수 있는 돌봄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함.
- 넷째, 결혼과 출산의 선택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함.
- 국가는 개인의 결혼과 자녀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저출산이라는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것에서 확장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다섯째, 결혼 및 첫째 자녀 출산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및 첫째 자녀의 출산과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함.
- 스웨덴의 스피드 프리미엄(Speed Premium)과 같은 둘째 자녀 출산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98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는 첫째 출산 뒤 30개월 이내에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사이에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첫째 출산 당시의 급여에 맞춰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여섯째,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가정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가정문화와 소통, 부부생활 등의 교육을 통해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들이 부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임.

본 내용은 경북행복재단(2024)에서 연구된 '경상북도 기혼자의 한자녀 선택 유형과 정책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 일부를 발췌해 재구성한 것임.

스페셜 코멘트

SPECIAL COMMENT



경북행복재단에서 진행한 이번 연구는 저출산 문제를 고심하는 연구자나 일반인들에게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촉발된 출산율 하락의 요인들이 부모의 주관적 시각에서 명쾌하게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양적인 계량연구방법, 즉 종속변수(Y) 출산율과 무수히 많은 요인으로 정의된 독립변수(X)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쏟아졌지만, 정책 시사점으로 삼기에는 복잡다기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연구는 한 자녀를 출산한 부모들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연구로서 둘째 자녀의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 및 직업군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첫째 자녀 출산 후 둘째 자녀를 기피하는 원인이 4가지 유형으로 집약되어 있다. 여기에는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둘째 자녀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등치가 됨에 따라, 일반인도 복잡한 저출산의 원인을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정책적 대응 방안도 정책 당국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능히 수긍할 수 있다. 추후 당국자들이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specific)이고 상세한(detailed) 정책대안을 구현해 내기를 기대해 본다.

행복한가족만들기연구소 출산양육만인포럼 대표 **이제상**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평가



안교철(경북행복재단 연구원)

1 개요

1) 평가배경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0월 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제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함.
- 경상북도는 2014년 2월 경상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분야 자체사업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도입'을 의결함.
-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 및 2021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의무화됨.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2019년 12월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조례 제정으로 매 3년마다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실시를 권고함.

2) 사업특성¹⁾

- 사업구분 : 경상북도 자체사업
 -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
- 도입배경 및 목적
 - ◆ 중증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자립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사업내용
 - ◆ 주간보호, 자립 교육, 공동작업장 운영,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등
- 예산액(2024년 본예산 기준)
 - ◆ 2,729백만원(도비 437, 시군비 2,292)

2) 평가대상 현황

- 사업량 : 12개소(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칠곡, 울진)

1) 2024년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업무편람

· 사업내용

표 1.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 주간보호, 자립 교육, 공동작업장 운영,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상담사업 등

· 사업비

표 2.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2024)	사업주체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12개소	2,729백만원 (도비 437, 시군비 2,292) * 센터당 약 1억8천~3억4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3) 평가대상 현황

표 3. 평가대상 현황

권역별	시설명	지역	인력현황
동부권	경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경주	센터당 4~5명
	포항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포항	
	울진군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울진	
서부권	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상주	
	구미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구미	
	김천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김천	
남부권	영천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영천	
	칠곡군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칠곡	
	경산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경산	
북부권	문경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문경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영주	
	안동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안동	

2 평가결과

1) 종합평가 결과 “우수(90점)” 수준으로 평가됨.

· 평가결과, 12개 센터는 총점 100점 만점에 평균 90점으로 “우수” 수준으로 평가됨.

표 4. 등급판정기준

등급	사업내용
우수	90.0~100
양호	80.0~89.9
보통	70.0~79.9
미흡	60.0~69.9
매우 미흡	60 미만

· 센터별 평가등급판정 결과, “우수” 등급 8개소, “양호” 등급 2개소, “보통” 등급 2개소임.

◆ 평가 최고/최저 점수: 최고 99점, 최저 73.5점

표 5. 평가등급 판정결과

등급	사업내용
우수 (90~100)	8개소
양호 (80~89.9)	2개소
보통 (70~79.9)	2개소
미흡 (60~69.9)	-
매우 미흡 (60 미만)	-
계	12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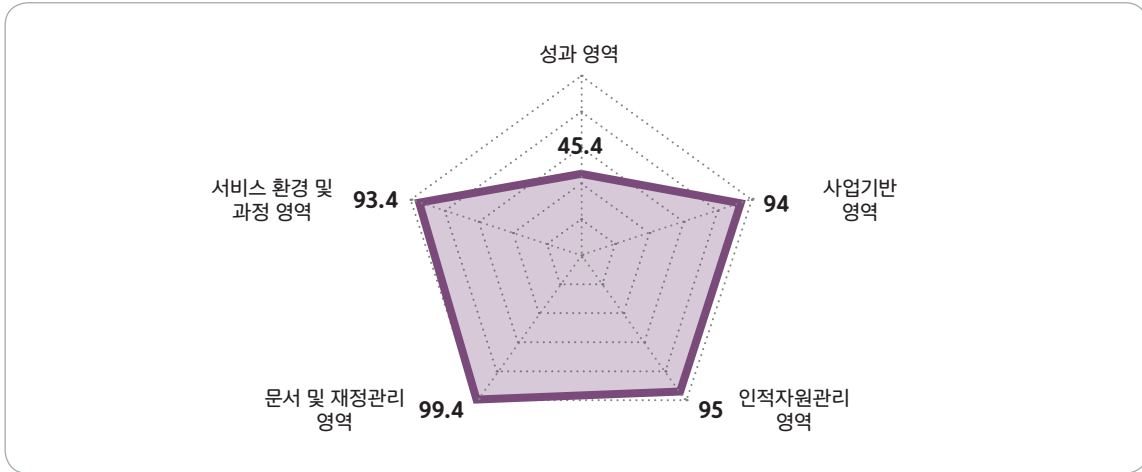
2) 영역별 평가결과 및 등급현황

표 6.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배점기준	전체평균	100점 환산	평가등급
성과 영역	10	4.5	45.4	매우 미흡
사업기반 영역	25	23.5	94	우수
인적자원관리 영역	20	19	95	우수
문서 및 재정관리 영역	15	14.9	99.4	우수
서비스 환경 및 과정 영역	30	28	93.4	우수

· 영역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성과 영역(45.4)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사업기반 영역(94)과 인적자원 관리 영역(95), 문서 및 재정관리 영역(99.4), 서비스 환경 및 과정 영역(93.4)은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됨.

그림 1. 영역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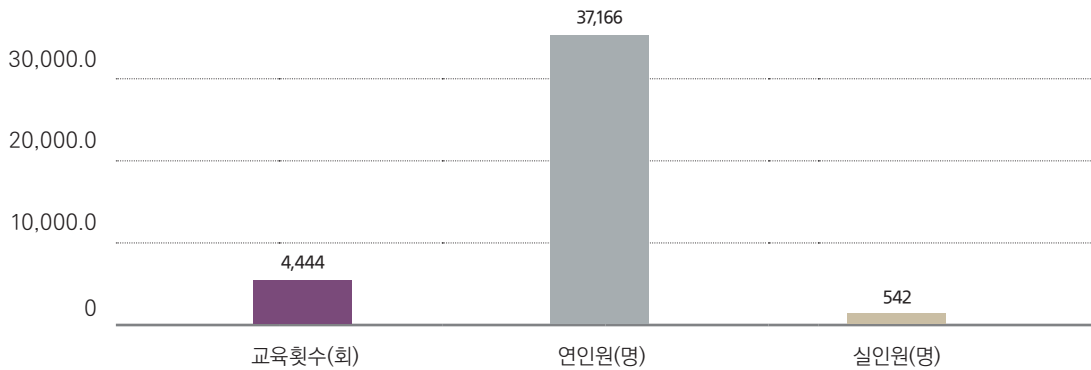


3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실적

1) 각 센터의 실적 파악 수치

· 이번 평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교육, 취업 지원, 취업 실적과 같은 성과 파악 지표도 포함되어 있음. 평가기준은 지난해회차 평가(3차평가: 2021년)시 각 센터에서 제출한 실적을 바탕으로 배점기준을 세워 평가하였고, 이 지표는 경북중증장애인들의 자립에 대한 성과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의의가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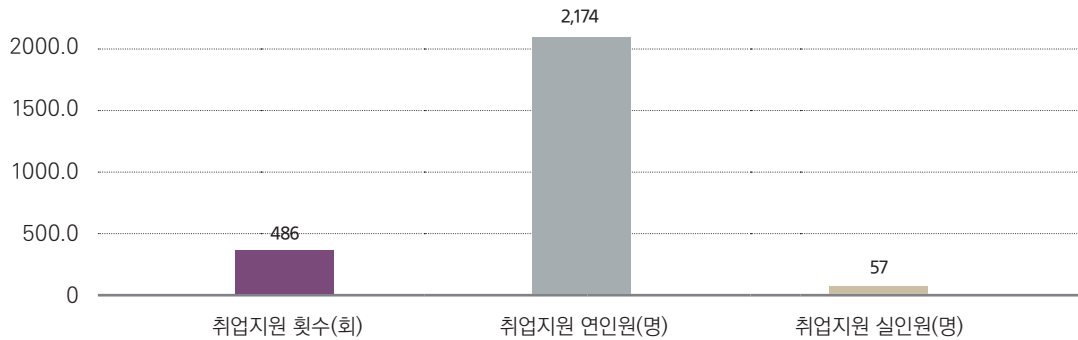
그림 2.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자립교육 실적



· 이번 평가를 통해 조사된 12개 센터의 최근 3년(2021~2023) 평균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자립교육 횟수는 4,444건으로 나타났으며, 자립교육을 받은 연인원은 3년 평균 37,166명으로 나타남. 자립교육을 받은 실인원에 대한 3년 평균은 542명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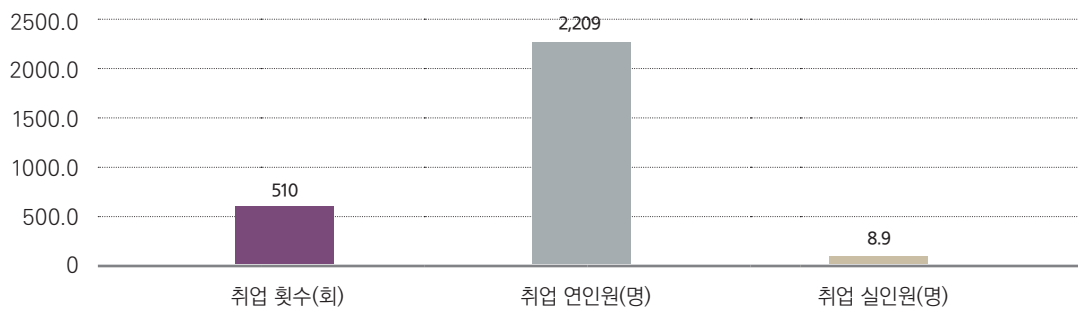
-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자립교육 여건 마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에 있어 지속적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그림 3.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취업지원 실적



- 경북 내 12개의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취업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3년(2021~2023) 동안 취업지원 횟수는 평균 486회를 진행했으며, 취업지원을 받은 연인원은 3년 평균 2,174명으로 나타남. 취업지원을 받은 실인원은 3년 평균 57명으로 확인됨.

그림 4.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취업 실적



- 경북 내 12개의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취업 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3년(2021~2023) 동안 취업 횟수는 평균 510회로 나타났으며, 취업한 연인원은 3년 평균 2,209명으로 나타남. 취업한 실인원은 3년 평균 8.9명으로 확인됨.
- 취업 횟수가 연인원을 살펴보면 낮은 수치인 것 같지는 않으나,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취업 실인원은 3년 평균 8.9명 밖에 되지 않으며,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제외한다면 그 수치는 현저히 더 떨어짐. 장애인 취업에 대한 문제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이 충분히 가능한 노동시장 환경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요구됨.

4 개선과제

1) 장애인복지 시설로서 위탁시설에 부합되는 물리적 환경 조성

- 경상북도 내 12개소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여러 형태의 건물에 입주해 운영되고 있음. 여러 센터가 노유자 시설에 부합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추가 비용을 부담하였거나, 재정적 부담에 직면한 상태임.
- 노유자시설 충족 요건은 이용인과 종사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고, 나아가 공공건물 또는 준공공건물과 상업용 건물의 이용인에 대한 상대적 서비스 질과 연결됨. 2024년 9월 6일 '경상북도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조례 '제10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여, 중증장애인자립지원 센터의 위탁시설 근거가 마련되었음.
- 따라서 경상북도 내에서 운영되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12개소는 위탁시설에 부합되는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어 서비스 질이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함.

2) 사회서비스 품질 안정화 및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표준화 필요

- **전문인력양성** : 사회복지에서 발달장애 분야는 장애의 특수성과 각 개인의 특성, 환경이 다양하게 상호작용하여 나타나 지원 서비스 제공과 근로여건이 매우 특수한 환경임.
-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양성 교과과정에서 발달장애와 관련된 내용은 장애인복지론 내에 수 페이지에 불과함.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발달장애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표준화** :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2019년 경북행복재단에서 발간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표준화가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여기에 보완할 내용으로는 이용절차에서 이용 상담과 인테이크 과정에서부터 지원에 대한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적용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이용인과 지원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함.
- 이용인이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동안 이용인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자립의 개념을 좀더 세분화하고 면밀히 정의하여, 각 부분에 대한 지원 욕구 판단에 대한 척도 개발과 표준화가 필요함.

3) 시설장 상근화와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 시설장 상근화 : 2024년 '경상북도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조례 '제7조(센터의 설치·운영) ③ 센터는 법 제58조제1항제2호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와 별표5에 따른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을 준용하여 설치한다'고 정하였음.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제3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주간이용시설'에는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시설장으로서의 책임성과 의무성을 부여하여야 함.
-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2008년 '경상북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자체)'에서는 상시 이용 인력을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이는 거의 17여 년간 변함없이 진행되어 왔음.
- 2024년 '경상북도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조례 '제7조(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였음. 따라서 본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인력은 시설장을 제외한 사회복지사 종사자 수는 6~7명이 되어야 함.

그림 5.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별표 1. 2024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단위: 원/월)

직위 (호봉)	생활시설 (사회,노인) 이용시설_사회복지직 (장애인)이용시설_일반직		사무국장 부장		과장, 생활복지사 과장		선임 생활지도원 신원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관리직	기능직
	원장 관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호봉	2,795,900	2,639,800	2,516,800	2,323,600	2,213,700	2,140,300	2,093,900	2,087,400	2,060,800	-	-	
2호봉	2,891,300	2,726,300	2,597,900	2,381,200	2,266,600	2,180,200	2,154,000	2,124,100	2,084,300	-	-	
3호봉	2,989,300	2,824,500	2,692,600	2,444,600	2,330,900	2,219,800	2,190,200	2,165,500	2,120,900	-	-	
4호봉	3,100,400	2,920,700	2,789,600	2,544,000	2,394,900	2,262,000	2,232,900	2,205,400	2,160,000	-	-	
5호봉	3,227,600	3,030,600	2,904,000	2,649,400	2,459,400	2,321,900	2,287,800	2,250,800	2,198,200	-	-	
6호봉	3,360,700	3,150,200	3,021,400	2,758,200	2,549,300	2,381,300	2,353,800	2,289,000	2,247,600	-	-	
7호봉	3,493,700	3,269,400	3,138,500	2,871,700	2,641,000	2,470,200	2,445,000	2,368,200	2,284,800	-	-	
8호봉	3,631,200	3,406,700	3,272,900	2,985,700	2,737,700	2,567,900	2,534,500	2,453,400	2,345,200	-	-	
9호봉	3,769,800	3,544,200	3,412,100	3,096,400	2,849,300	2,659,800	2,609,800	2,522,700	2,419,400	-	-	
10호봉	3,901,500	3,678,200	3,544,000	3,214,400	2,943,000	2,740,100	2,693,000	2,610,900	2,502,300	-	-	
11호봉	4,043,100	3,800,700	3,673,000	3,323,300	3,036,600	2,811,400	2,757,800	2,674,700	2,566,400	-	-	
12호봉	4,162,500	3,911,800	3,777,800	3,421,800	3,120,100	2,872,800	2,822,800	2,746,800	2,629,000	-	-	
13호봉	4,273,600	4,010,500	3,876,300	3,507,800	3,190,400	2,931,700	2,873,800	2,810,800	2,694,700	-	-	
14호봉	4,364,400	4,103,100	3,969,100	3,591,300	3,267,000	2,991,800	2,919,400	2,847,400	2,744,500	-	-	
15호봉	4,455,900	4,191,300	4,058,500	3,671,400	3,340,500	3,054,000	2,974,900	2,879,700	2,787,800	-	-	
16호봉	4,542,500	4,275,800	4,129,400	3,747,000	3,411,300	3,121,700	3,026,400	2,935,800	2,831,000	-	-	
17호봉	4,623,700	4,347,200	4,203,800	3,819,100	3,477,800	3,188,900	3,075,700	2,990,700	2,885,400	-	-	
18호봉	4,700,500	4,420,600	4,278,500	3,889,100	3,541,900	3,253,000	3,134,100	3,045,700	2,938,300	-	-	
19호봉	4,772,400	4,490,600	4,345,000	3,950,900	3,601,400	3,310,600	3,191,500	3,092,200	2,994,300	-	-	
20호봉	4,836,500	4,557,000	4,409,400	4,012,700	3,659,400	3,366,800	3,249,400	3,137,000	3,041,500	-	-	
21호봉	4,899,600	4,616,700	4,472,400	4,069,800	3,718,300	3,417,300	3,300,900	3,190,600	3,094,600	-	-	
22호봉	4,960,100	4,672,900	4,530,500	4,125,100	3,769,500	3,468,200	3,347,600	3,251,300	3,155,700	-	-	
23호봉	5,016,700	4,729,100	4,585,800	4,177,500	3,818,600	3,514,800	3,401,200	3,314,200	3,216,100	-	-	
24호봉	5,070,000	4,782,900	4,637,500	4,223,800	3,865,600	3,560,700	3,446,700	3,372,600	3,275,600	-	-	
25호봉	5,122,000	4,832,200	4,689,000	4,269,800	3,915,700	3,604,300	3,494,500	3,426,400	3,335,500	-	-	
26호봉	5,164,600	4,880,200	4,733,900	4,314,600	3,960,000	3,644,300	3,537,100	3,473,500	3,391,000	-	-	
27호봉	5,208,000	4,921,600	4,776,200	4,352,400	3,996,000	3,678,700	3,571,600	3,519,900	3,437,200	-	-	
28호봉	5,245,800	4,953,900	4,814,100	4,390,700	4,033,800	3,712,600	3,595,400	3,551,800	3,471,700	-	-	
29호봉	5,274,800	4,983,900	4,846,000	4,425,900	4,069,100	3,745,300	3,614,800	3,587,600	3,507,700	-	-	
30호봉	5,299,200	5,015,100	4,879,700	4,458,800	4,100,900	3,776,300	3,634,400	3,609,600	3,539,600	-	-	
31호봉	-	5,027,700	4,910,800	4,488,400	4,132,000	3,806,400	3,656,400	3,646,700	3,564,300	-	-	

※ 생활시설의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 축락의사 기본급 권고기준: 3,064,300원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직, 일반직 외 직종은 별표2~별표5 적용

- 이처럼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인력 총원과 더불어 인건비와 관련된 처우개선이 절실함. 2024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인건비 처우 수준을 봤을 때, 1호봉의 세후 수령액은 2백만원을 넘지 않음.
- 이런 낮은 처우는 직원의 이직 발생과 근무의 연속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로서, 특히 전문인력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현장에는 더욱 중요한 문제임. 처우개선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근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음. 이처럼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가능할 것임.

참 . 고 . 문 . 헌

경상북도. (2024). 2024년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업무편람.

본 내용은 경북행복재단(2024)에서 실시한 ‘2024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평가’ 보고서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스 페 셸 코 멘 트

SPECIAL COMMENT



경상북도에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시범사업은 2007년 경주시에서부터 시작하여 17년이 되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업의 근본 취지는 당시 열악한 지적·자폐성 장애인(이하 발달장애인)의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경상북도 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절실한 요구에 의하여 많은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된 경상북도만의 고유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학령기 이후 직업시설, 생활시설(현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현 주간이용시설)간 서비스 지원체계가 유리된 상태에서 중간 매개 역할을 하고자, 당시에는 신개념의 장애인복지시설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동안 3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시설평가와 더불어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연구’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체계화된 시스템에 구축되었다. 하지만 이용인의 욕구, 보호자의 욕구 등을 근거로 한 이용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지원체계 구축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아직은 시설 중심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에 이용인이 참여하는 방식에서, 이후에는 이용인의 지원욕구 판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설 운영을 설계하여야 한다. 자립과 지원에 대한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가 제대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지원에 대한 판단, 지원 판단에 따른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제공과 적용의 평가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용인이 단계적으로 자립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된 사회복지사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평가를 토대로 향후에는 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발달장애의 사회적환경 변화 활동, 지원 시스템의 구축,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어 성과 중심의 평가에서 시설의 기본적인 환경, 종사자 소양과 역량·전문성, 체계화된 지원시스템, 이용인의 긍정적인 변화 등을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평가 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는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립과 지원에 대한 각각의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를 장애인복지 트렌드에 맞게 재설정하여야 하고, 여기에 맞추어 발달장애에 관여되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또는 서비스 사업의 평가 기준들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차기 평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이고, 진보된 평가를 기대해 본다.

경북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협의회장 **최 외 철**



밝은 내일, 도민이 행복한 경북!

MISSION

경상북도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가치 실현

VISION

경북형 사회통합 서비스로 지역균형 발전 선도 기관



경영목표 & 추진전략

사회서비스 정책연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인력 역량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 수요 맞춤형 정책 개발 및 대응	사회서비스 기관 현장 지원	보건복지 관련 교육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연구 수행 및 기초통계 구축 사회서비스 협력체계 기반조성 및 학술대회 개최 도·시·군 및 현장 요구의 맞춤형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서비스 현장 개선과제 발굴 컨설팅·평가인증 시설운영·평가 표준 매뉴얼 개발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교육콘텐츠 개발·운영 사회서비스 현장 교육 수요 조사 교육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인권,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및 확산 노동환경, 안전 등 사람중심 안전사회 구축 도민참여, 상생협력 등 참여중심 협력사회 구축



3년 연속(2020-2022)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 S등급' 달성

「경북행복 BRIEF」는 경북행복재단의 보건·복지 연구성과 및 주요 동향을 경상북도민에게 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분기별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위원

김성훈 | 남영우 | 이다솔